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대상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3. 평가 대상 기간: 2022. 10. 1.부터 2023. 9. 30.까지 수행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전체
4. 평가 방법: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 기준: 운영체계(400점)와 업무성과(600점)로 구분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 결정

등급	기준	등급	기준
S등급	900점 이상	C등급	600점 이상 700점 미만
A등급	800점 이상 900점 미만	D등급	600점 미만
B등급	700점 이상 800점 미만		

·평가 운영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D(평가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함

6. 평가 일정

- ① 평가 실시: 2023. 11. 6. ~ 2023. 11. 30.
(방문 평가일은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 ② 평가 결과(절대점수) 통보: 2023. 12. 초(예정)
- ③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2023. 12. 중(예정)
※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④ 최종 평가 결과 및 등급 공표: 2024. 1.(예정)

7. 자체평가보고서 및 기술지도 우수사례 자료 제출

- ① 관련지표: (B.4.4)자체평가보고서 등록여부(가점+10점) 및 적정성(가점+10점), (B.3.3)기술지도 우수사례(배점 40점)
- ② 제출기한: 10월 26일(목) 18시 限
- ③ 제출방법: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실시 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자체평가보고서(한글파일), 사전 제출자료(엑셀파일) 및 기술지도 우수사례(한글파일) 작성 후 3가지 모두 K2B에 업로드
 - 기한 경과 후 제출 시 평가에 미반영(미제출 처리)

8. 기타 사항

- ① 두 개 분야 동시 지정 기관 평가 방법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동시 등록 기관의 경우 분야별로 별도로 평가 실시(사전 제출 자료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② 두 개 이상 지방청 지정기관 평가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5항에 의거 두 개 이상 지방청에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평가 후 각 지방청별로 평가 결과 공표
- ③ 기타 문의사항
 - 평가지표 및 평가 운영 전반: 본부 민간기관평가부(052-7030-103, 108)
 - 평가 일정 관련: 중부권평가센터(서울, 경기, 강원, 충청, 대전 등, 02-6924-8877)
남부권평가센터(부산, 대구, 광주, 경상, 전라, 제주 등, 052-703-3302)

2023년 10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